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85,589,847	38,567,695
일반회계	1,020,894,319	30,626,830
특별회계	264,695,528	7,940,866
공기업특별회계	187,849,402	5,635,48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6,128,341	2,283,8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196,563	1,655,8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524,498	1,695,735
기타특별회계	76,846,126	2,305,384
주택사업특별회계	3,478,136	104,344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184,388	155,5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1,864	6,056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52,189	1,566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7,424,223	222,727
교통사업특별회계	12,027,110	360,81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7,078,293	812,34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1,399,923	641,99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419,55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